

『문화교차연구』 원고 투고 규정

2024 9월 1일 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문화교차연구』 원고 투고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문화교차연구소 발행 학술지 『문화교차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투고에 대한 업무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원고의 성격)

1.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투고 원고가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문화교차연구』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4조 (원고 범위) 문화교차연구소의 학술지 『문화교차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할 수 있다.

1. 감정과학에 관한 논문
2. 사회심리학에 관한 논문
3. 예술학에 관한 논문
4. 한류문화학에 관한 논문
5. 동서양 고전과 관련된 논문
6. 새로운 자료 소개나 번역

제5조 (저작권) 『문화교차연구』에 게재된 원고 등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화된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원고의 필자가 본인의 원고를 사용할 경우 본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6조 (투고 자격) 원고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수료자가 투고를 원할 경우 투고 자격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투고 시한 및 발행시기) 『문화교차연구』는 6월말과 12월말 연2회 발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투고 기한은 각각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투고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용지크기 A5(152×225) 글자크기 11포인트로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단 투고된 원고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문화교차연구』에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도록 한다.

1. 심사료 10만원
2. 게재료 20만원
3. 재심의 경우 재심사료 10만원 추가
4. 원고가 20페이지 넘을 경우 페이지당 1만원씩 추가

제10조 (투고 논문 심사 결과)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게재
 - 2) 반려
2. 게재에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원고를 다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게재와 반려를 결정한다.

제10조 (원고 작성 방법) 원고 작성 방법은 별도의 '원고 작성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